



7월 호우 피해 복구에 총 713억 원 투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
-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국세 납부 유예 등 간접 혜택 제공
- 8월 호우 피해지역에도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거쳐 복구비 지원 예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8월 18일(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파손 5동(전파 2동, 반파 3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ha, 농경지 32ha,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7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713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이다.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하였다.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업체당 300만 원, 피해면적에 따라 산정한 농·산림작물, 농림시설 복구비용 등을 지급한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또한,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시·군·구별 피해금액이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지원기준액 이상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다양한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용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용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가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8.7.)된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가 추가 지원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며, “8월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종빈 (044-205-5310)
		담당자	사무관	문균호 (044-205-5314)
담당 부서 <간접지원>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태석 (044-205-5510)
		담당자	사무관	김순옥 (044-205-5514)
<공동>	기획예산처 국민안전예산과	책임자	과 장	김영웅 (044-214-2970)
		담당자	사무관	박준하 (044-214-2971)
<공동>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	책임자	국 장	이희상 (044-203-2280)
		담당자	서기관	최복현 (044-203-2291)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책임자	과 장	최종순 (044-205-2871)
		담당자	사무관	안광현 (044-205-2872)
<공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	책임자	과 장	채태선 (044-201-6490)
		담당자	사무관	신옥련 (044-201-6493)
<공동>	산림청 산사태방지와	책임자	과 장	김영혁 (042-481-8920)
		담당자	사무관	이남식 (042-481-4274)

참 고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안내

□ **지원대상** :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자

※ 피해발생 지방정부(인명피해는 등록 주소지)에서 발급 가능

□ **지원방법**

- (원스톱 지원) 별도 신청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소관기관에서 지원
- (신청 지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소관기관에 직접 신청

□ **지원항목** : 총 38개 항목 (일반재난지역 25개 + **특별재난지역** 13개)

구 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소관기관	지원 방법(구비서류)
1	공공임대 주거 지원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시·군·구 주택부서	신청지원
2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수준 감면	시·군·구 주택부서	신청지원
3	국세 납부 유예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	관할세무서	원스톱 지원
4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기한연장 최대 1년까지 징수·체납처분 유예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시·군·구 세무부서	원스톱 지원
5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상속재산 멸실·훼손 시 손실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관할 납세지 세무서	신청지원 (재해손실 공제신고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6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시·군·구 상하수도 부서	원스톱 지원
7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 (연장 사유 지속 시 납부 예외 연장 가능)	국민연금공단	신청지원

구 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소관기관		지원 방법(구비서류)
8	재해복구자금 융자 및 보증	농·어·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	한도 재해복구비중융자금 기간 15년 이내(가치 5년) 금리 연1.5%고정	금리, 대출기간, 한도 등은 변동 가능	농·임·어업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청지원 (융자신청 관련 서류)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 자금융자	한도 45~143백만 기간 20년 이내(가치 3년) 금리 연1.5%(가변)		주택	우리은행	신청지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자금 융자	한도 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기간 3년 이내(가치 2년) 금리 연1.9%고정 (일반은행 연2.0%)		중소기업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신청지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자금 융자 (재해자금)	한도 1억원이내 기간 5년 이내(가치 2년) 금리 연2.0%고정(26년)		소상공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신청지원 (재해소상공인 확인증)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 3억원 전액보증 보증료율 0.5%고정 (특별재난지역 0.1%)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역신용 보증재단	신청지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피해사실확인서)
9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우체국	수수료 면제	원스톱 지원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신청지원 (신분증, 피해사실확인서 관할우체국 제출)
10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시·군·구 토지부서		신청지원 (감면 신청서)
11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는 국·공유재산, 소득이 감소된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시·군·구 재무·회계 부서 또는 지방산림청		신청지원 (감면 신청서)
12	농기계 수리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 해당 지방정부에서 농기계회사, 수리업체와 지원·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			시·군·구 농업부서		원스톱 지원
13	농지임대료 감면	맞춤형농지지원 사업(한국농촌공사 시행)에 대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율 30% 이상인 농업인 임대 농지를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차등 감면(45~100%)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지원 (감면 신청서)

구 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소관기관	지원 방법(구비서류)
14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2년 이내)	직업안정기관	신청지원 (피해사실확인서)
15	가전제품 수리 지원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협력사(삼성, LG)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리 가능하며, 일부 품목은 유상수리(50~100%), 공휴일은 미영업	삼성전자 LG전자	신청지원
16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재난 등으로 차량 운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검사기간 연장·유예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지원 (연장·유예 신청서)
17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허용	-	신청지원 (피해사실확인서)
18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무청	신청지원 (연기 원서)
19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재난피해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병무청 예비군부대	신청지원 (피해사실확인서)
20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관할 주민센터	신청지원 (피해사실확인서)
21	과태료 징수 유예	재난 피해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1년)	관계 행정청	신청지원 (과태료 분할 납부 등 신청서)
22	법률지원 서비스	지방정부 요청 시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인력 파견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지원
2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확인서 발급기관	원스톱 지원
24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 화재 이외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만 지원	지방보훈관서	원스톱 지원
25	위기가족 긴급지원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전국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신청지원 (초기상담 후 지원여부 결정)

구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소관기관	지원 방법(구비서류)
26	전기요금 감면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 및 파손은 1개월분의 50% 감면)	한국전력공사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27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이 포함된 월의 사용요금	한국가스공사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28	지역난방요금 감면	재난피해로 인해 열공급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29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시내·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이동전화 월 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통신사 (SKT, KT, LG+, 알뜰폰 등)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30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요금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 감면을 및 지원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	유료방송 사업자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31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지역 무선국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32	TV 수신료 면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33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재난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에 대해 보험료 3개월간(30~50%)경감(인적·물적 피해 동시 발생 시 6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34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35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단독주택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한정	시·군·구 농지전용부서	신청지원 (특별재난지역)
36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한정	시·군·구 산지전용부서	신청지원 (특별재난지역)
37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잔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병무청 예비군부대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38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의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허청	신청지원 (특별재난지역)